주요 문의사례

상속 취득세는 5년간 신고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속설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10년으로 조정된 상태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상속재산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직권으로 부과되고 있고 그때에는 세금이 가산된 상태이며 체납시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월사망	→	기한만료 8월이후 → 5년뒤 무신고 직권고지 (무신고가산 20% + 매일 0.03%가산)	→	60개월 중가산 (첫달 3% + 매월 1.2%)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사망한 날 사망자의 재산은 민법상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이기에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및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하여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분할협의서

취득세를 신고 기한내(6개월)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 백만원이면 6개월이 지난 바로 다음날 200,000원 + 300원이 더 가산되며 계속가산

상속인 행방불명, 국외거주등으로 상속취득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해 상속권자 연대납세의무로 공동과세되오니 기한내 법정상속으로 신고바랍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내(부과제척기간) 증가한 가산세과 함께 직권고지 되오니 꼭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필요서류를 지참 방문 또는 우편(연락처 기재) 신고바랍니다.

※ 필요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단독으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상속물건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으며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상속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상속등기를 법원 등기소에 완료한 후 상속인 재분할에 의한 **재등기**시에는 지분이 증가한 상속인은 증가한 지분만큼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 갑 25%, 을 25%, 병 25%, 정 25%의 지분으로 등기 등록 후 갑의 지분 25%를 을이 받아서 을의 지분이 50%로 늘어난 경우 을은 증가한 지분만큼(25%)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취득세만 납부하고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